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4-1	거창군의회 기본조례안	1
2024-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2024-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과)	21
2024-4	거창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40
2023-5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행복나눔과)	45
2024-6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52
2024-7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행복농촌과)	52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
----------	--------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의원의 활동원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다. 위원회와 위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제26조)

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7조 ~ 제32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

-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차. 다른 조례의 개정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 ~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5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거창군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장 위원회와 위원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

제21조(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

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공청회 및 토론회) 의회는 안전심사 및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27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29조(군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9조 규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의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을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군정질문요지서

제○○회 거창군의회 제○차 본회의(년 월 일)

질문의원	(서명)		
출석대상 공 무 원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u><질문내용></u>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삭제함(안 제6장)

- 군정질문, 서면질문, 서류제출의 건(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신설)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제19조의2, 제70조, 제8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제74조·제77조·제83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 ~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을 “거창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72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장(제66조·제66조의2·제67조·제67조의2·제68조)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u>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u> 거창군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u>의장</u> 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생략) 제4조(개회식) <u>의회</u>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u>제63조</u>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u>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u> 거창군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u>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회식) <u>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u>제72조</u>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u>군수</u>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u>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u>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조례안예고) <삭 제> ② 의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현행	개정안
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5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④ (생략) ⑤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u>」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 「거창군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 (생략)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군수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u>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u>」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 「거창군의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 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삭 제>

현행	개정안
의장이 정한다. <u>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u> <u>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u>	<삭 제>
<u>제67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u>	<삭 제>

현행	개정안
<u>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u>제68조(군수등의 발언)</u>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u> ① 의장은 <u>법 제79조의 규정</u>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u>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u> ① ~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u>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u><삭 제></u> <u>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u> ① 의장은 <u>법 제91조에 따라</u>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95조에 따라</u>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 나.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안 제3조)
- 다. 주민조례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 라.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 방법(안 제6조, 안 제7조)
- 마. 청구인 명부의 보정 절차 및 기간(안 제9조)
- 바.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안 제10조)
- 사.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1조)
- 아. 주민조례 입안 지원(안 제12조)
- 자.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 협조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 ~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대표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

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한 경우

⑥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구인 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청구인명부 연대 서명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거창군청 및 각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의회 누리집,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_주민조례청구서

별지 2_공동대표자용 [] 청구· [] 철회· [] 선정자대표자 지정 서식

별지 3_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별지 4_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의 표지)

별지 5_청구인명부

별지 6_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7_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8_청구인명부서명 이의신청서

별지 9_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신청서

별지 10_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별지 11_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거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이유		
주요내용	○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

청구인의 대표자

[illegible]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의장 귀하

작성 방법

-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도로명 주소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장 직인			

(청구인명부의 표지)

청구인명부

청 구 명 :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총○○권 중 제○권)

거창군 총 서명 주민 수 : 명
○○면·동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 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 1.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3.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 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4
----------	--------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안 제4조)
- 라. 표지판의 설치기준(안 제5조)
- 마. 지원표시의 설치기준(안 제6조)
- 바. 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안 제7조)
- 사. 철거(안 제8조)
- 아. 비용부담(안 제9조)
- 자. 관리 감독 및 평가(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본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6. ~ 01. 0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및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지원표시”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를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제4조(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내용)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기준)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표지판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현장에 설치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에 설치.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이 경우 해마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6조(지원표시의 설치기준) 지원표시는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등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등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등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5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신미정,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1. 제안 이유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 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사. 대장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2. 22. ~ 12.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신문, 거창군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별지1)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2)

입양지원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 아동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입양일			현재 장애상태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지급 내역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illegible]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6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이재운,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방연물품의 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안전총괄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01. 02. ~ 01. 0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군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 호, 20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7	발의일자	2024. 01. 09.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사항(안 제4조)

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복농촌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2. 22. ~ 2023. 12. 2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거창군 소재(이하 “군”이라 한다)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귀농귀촌단지로의 진입도로, 귀농귀촌단지 내 도로·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상수관로·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입주예정자”란 귀농귀촌단지에 입주할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
 - 나.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충족 가능한 사람
4. “입주예정자대표”란 입주예정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주체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호 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지원요건)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주예정자 명의의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다

- 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전체 확보. 다만,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를 확보할 것
 3. 지원 사업계획 승인부터 귀농귀촌단지 건축 **사용승인** 완료까지 입주 예정자 명의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인정한다.
 - 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준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입주예정자대표는 지원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확인을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 대상 지역 현황	위 치	경남 거창군 ()읍면 일원						
	면 적	제곱미터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그밖의 현황
		면적(m ²)						
		비율(%)						
용도지역 현황(m ²)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사업 개요	계 획 가구수	가구 (입주예정자 : 명)						
	소요 사업비	백만 원						
	사업 시행자	-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			사업예정기간			
	주 요 사업내용	- - -						
	기반시설 요청사항	- - -						
	그 밖의 사항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거창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I. 개요

1. 사 업 명 :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 제곱미터
5. 입주계획 세대수 : 세대(입주예정자 명)
6. 총사업비 : 백만 원
7. 사업기간 :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 주 택 건 설 :

II.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 승락된 경우 : 사용승낙서 첨부
 - * 지상권 설정된 경우 :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명단(주소 명기)

III. 부문별계획

1. 택 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 수 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 수 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 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 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IV.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마을을 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그 밖의 사항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10킬로미터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부 지 명 세 서

(읍·면 리)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유자	용 도	그 밖의 사항
합 계					